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19	8	1993. 3. 25.	총재 김명호

의안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65조

제의취지 전반적인 금리수준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여신금리
인하 여력을 확충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 참고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한국은행법 제65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 ~ 제5조	(생 락) (신 설)	제1조 ~ 제5조	(현 행 과 같 음)			
		부 직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3.26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명시
		2. (경과조치) 1993.3.25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및 상호부금에 대하여는 당초약정기일까지 증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별 표>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별 표>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구	분	구	분	이	율	
1. 정기예금	연 9.0%(지방은행은 연 9.5%). 다만, 2년이상만기의 경우에는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1. 정기예금	연 8.5%(지방은행은 연 9.0%). 다만, 2년이상만기의 경우에는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0.5%포인트 인하
2.	(생 락)	2.	(현행과 같음)			
3. 자유저축예금	연 10.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5,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3. 자유저축예금	연 9.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5,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 1.0%포인트 인하
4.~8.	(생 락)	4.~8.	(현행과 같음)			
9. 정기적금	연 9.0% (지방은행은 연 9.5%)	9. 정기적금	연 8.5% (지방은행은 연 9.0%)			- 0.5%포인트 인하

현행		개정 (안)		비고
구분	이율	구분	이율	
10. 가계우대정기 적금	연 12.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계약 기간은 3년, 계약액은 1인당 1,000 만원 이내. 다만, 세금우대종합통장 으로 동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약액 한도초과는 예외로 함)	10. 가계우대정기 적금	연 11.5%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계약 기간은 3년, 계약액은 1인당 1,000 만원 이내. 다만, 세금우대종합통장 으로 동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약액 한도초과는 예외로 함)	- 0.5%포인트 인하
11. 근로자장기저축	연 12.0%	11. 근로자장기저축	연 11.5%	- 0.5%포인트 인하
12.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정기적금 최고이율+2.0%포인트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정기적금에 대한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현행과 같음)	- 0.5%포인트 인하
13. 상호부금	연 10.0%	13. 상호부금	연 9.5%	- 0.5%포인트 인하
14. 주택부금	정기적금 최고이율	14. 주택부금	(현행과 같음)	- 0.5%포인트 인하
15. 상업어음 일반 매출	연 7.5%. 다만, 만기가 60일이상이고 액면금액이 3,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15. 상업어음 일반 매출	연 7.0%. 다만, 만기가 60일이상이고 액면금액이 3,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0.5%포인트 인하
16. 무역어음 일반 매출	연 7.5%. 다만, 만기가 60일이상이고 액면금액이 3,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16. 무역어음 일반 매출	연 7.0%. 다만, 만기가 60일이상이고 액면금액이 3,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0.5%포인트 인하